

입원적합성심사위원회 운영 규정

[시행 2026. 3. 30.] [보건복지부훈령 제2026-68호]

보건복지부(정신건강정책과), 044-202-3867
보건복지부(정신건강정책과), 044-202-3857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46조와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령"이라 한다) 제22조 및 제23조에 따른 입원적합성심사위원회와 입원심사소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입원적합성심사위원회 및 입원심사소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법과 영에서 규정한 사항을 제외하고는 이 규정을 따른다.

제2장 입원적합성심사위원회 및 입원심사소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제3조(설치 등) ① 법 제43조 및 제44조에 따른 입원등의 적합성을 심사하기 위하여 법 제21조에 따른 각 국립정신병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이하 "국립정신병원등"이라 한다)에 입원적합성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두며, 위원회에는 입원심사소위원회(이하 "소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의 심사대상 관할 지역은 영 제21조제2항 별표 4를 따른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위원회가 설치된 국립정신병원등은 상호 간 합의를 통해 1년을 주기로 타 국립정신병원등의 심사를 관할한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 변경될 수 있다.

제4조(구성 등) ①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0명 이상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은 각 국립정신병원등의 장으로 하며, 위원은 위원장의 추천으로 보건복지부장관이 임명 또는 위촉하되 법 제46조제3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 각각 1명 이상을 포함하여야 한다.

③ 위원장은 별지 제1호 서식의 신청서를 받아 위원을 추천한다. 위촉된 위원은 별지 제3호 서식의 위촉동의서 및 별지 제4호 서식의 보안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④ 소위원회는 5명 이상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회 위원 중 위원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⑤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제5조(위원의 해임·해촉) 보건복지부장관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해당 위원을 해임하거나 해촉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 심사내용 누설 및 개인정보 유출,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5. 법 제46조제3항의 각 호에 해당하는 자격 또는 직위가 해제되는 경우

제3장 입원적합성심사위원회의 운영

제6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해당 위원회를 대표하며,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총괄한다.

1. 위원회 운영 일반에 관한 사항
2. 보건복지부장관에 위원의 위촉·해촉 요청
3. 입원등 적합성의 직권조사에 관한 사항
4. 소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7조(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회는 월 1회 이상 회의를 개최하여야 한다. 다만, 심사사항이 없는 달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며, 위원장은 의결에 참여한다.

③ 위원회는 법 제46조제7항에 따라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위원장이 해당 국립정신병원등 소속 직원 중에서 지명한다.

제8조(서면의결) ① 위원장은 효율적인 의결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별지 제5호 서식에 따라 서면으로 의결을 요구할 수 있다.

- ② 서면의결을 위해서는 위원장이 정하여 통보한 의결일의 3일 전까지 각 위원들에게 별지 제5호 서식이 도달하여야 한다.
-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제16조제3항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 통지 마감일에 맞출 수 있도록 별도의 기간을 정하여 의결할 수 있다.
- ④ 별지 제5호 서식은 우편, 팩스, 전자메일 등의 방법으로 전달할 수 있다.

제9조(자문단의 구성) 위원회는 입원등 적합성 심사 업무를 전문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전문가문단을 구성·운영할 수 있다.

제10조(입원심사제도운영 부서) ① 각 국립정신병원등의 장은 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해당 국립정신병원등의 소속 직원으로 입원심사제도운영 부서를 구성·운영한다. 이 경우 입원심사제도운영 부서는 각 국립정신병원등의 사정을 고려하여 과 또는 팀으로 한다.

- ② 제1항에 따른 입원심사제도운영 부서는 부서장, 법 제46조제7항에 따른 위원회 간사 및 영 제25조제2항에 따른 조사원으로 구성한다. 부서장과 조사원은 간사를 겸임할 수 있다.
- ③ 입원심사제도운영 부서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위원회 개최 및 운영에 관한 사무
 2. 위원장 직권에 의한 대면조사 대상자 선정에 관한 사무
 3. 소위원회 운영 및 심사 결과에 관한 사무
 4. 입원적합성조사 업무에 관한 사무
 5. 기타 위원장이 지시한 사항

제4장 소위원회의 운영

제11조(소위원회 위원장) ① 법 제43조 및 제44조에 따른 입원등의 적합성을 심사하기 위한 소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장이 지명한다.

- ② 소위원회 위원장은 해당 소위원회를 대표하며, 소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 ③ 소위원회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소위원회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2조(소위원회의 운영) ① 소위원회는 월 1회 이상 회의를 개최하여야 한다. 다만 심사사항이 없는 달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 ② 소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원활한 심사를 위하여 부득이한 경우 타 소위원회 위원이 출석한 경우에도 개의할 수 있다.
- ③ 소위원회 위원장은 제2항에 따른 의결에 참여한다.
- ④ 소위원회에는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위원장이 해당 국립정신병원등 소속 직원 중에서 지명한다. 위원회의 간사가 소위원회의 간사를 겸임할 수 있으며, 간사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관리한다.
 1. 소위원회 심사에 필요한 관련서류 등의 구비, 별지 제6호 서식의 회의록, 별지 제7호 서식의 심사의결서 및 별지 제8호 서식의 심사 결과 작성
 2. 기타 위원장이 지시한 사항
 3. 소위원회 운영에 따른 전반적인 사항

제13조(자료 제출 요청) ① 소위원회는 입원적합성심사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 행정기관, 정신건강증진시설 또는 관련 기관, 단체 등에 의견이나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 ② 소위원회는 법 제43조 및 제44조에 따른 입원등의 사실 관계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정신질환자를 입원시킨 정신의료기관장 또는 그 소속 의료인에게 의견이나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제5장 입원등적합성 심사

제14조(심사절차) ① 위원장은 법 제45조제2항에 따라 신고된 입원등을 소위원회에 회부하여야 하고, 입원등을 한 사람이 피후견인인 경우에는 관할 가정법원에 입원사실 등을 통지하여야 한다.

- ② 소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회부된 입원등의 적합 또는 부적합 여부를 심사하여, 입원등적합성 심사를 완료한 경우 완료한 날부터 3일 이내에 위원장에게 별지 제8호 서식의 심사결과를 보고하여야 한다.

③ 소위원회가 제2항에 따라 입원등의 적합성을 심사할 경우, 입원등을 한 사람은 소위원회에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 ④ 위원장은 최초로 입원등을 한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정신의료기관등의 장에게 입원등의 적합 또는 부적합 여부에 대한 구체적인 근거와 사유 등을 명시하여 별지 제9호 서식의 입원·입소 적합여부 통지 및 확인서를 서면(국가입·퇴원관리시스템 포함)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⑤ 소위원회는 입원적합성심사 통지가 이루어지기 전에 정신의료기관 등의 장이 해당 입원등을 한 사람을 퇴원등을 시켜 입원등의 적합성을 심사할 이익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에는 제2항에도 불구하고 각하한다.

제15조(입원등적합성의 조사) ① 법 제45조제2항 및 영 제20조에 따른 신고사항 및 증빙서류를 확인한다.

② 위원장은 입원등을 한 사람이 대면조사를 신청하거나, 입원 등의 적합성이 의심되는 등 영 제24조 각 호의 경우에는 직권으로 조사원에게 해당 정신의료기관등을 출입하여 입원등을 한 사람을 직접 면담하고 입원등의 적합성, 퇴원등의 필요성을 조사하게 할 수 있다.

③ 입원등의 적합성이 의심되는 경우, 입원심사제도운영부서의 부서장은 이를 위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위원장은 이를 검토하여 대면조사 대상자로 승인할 수 있다.

④ 조사를 수행하는 조사원은 권한을 나타내는 증표를 조사대상자에게 보여주어야 한다. 그 권한을 나타내는 증표는 별지 10호 서식의 조사원증 발급대장으로 관리한다.

⑤ 위원장은 그 조사과정에서 발견한 위법 사항을 유관기관에 통보하거나 고발할 수 있다.

제16조(소위원회의 심사) ① 소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사한다.

1. 법에 따른 적법한 입원등을 하였는지에 관한 사항
 2. 신고 당시 입원등이 필요했는지 여부에 관한 사항
 3. 환자의 진단과 증상, 치료경과에 따른 퇴원등 필요성에 관한 사항
- ② 소위원회는 제1항의 심사에 있어, 다음 각 호의 내용을 검토하여야 한다.

1. 기초조사보고서(필수첨부서류확인)
2. 보호, 행정입원등 신고서
3. 환자 및 보호의무자 증빙서류
4. 입원유형 및 전환에 따른 서류
5.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2인의 진단결과서 각 1부
6. 대면조사보고서(작성 시)
7. 입원등을 한 당사자의 의견진술(진술서 등)
8. 기타 심사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추가 제출받은 자료 등

③ 소위원회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심사일을 재지정하여 심사할 수 있다. 다만, 통지 마감일이 임박하는 등 긴급한 사유로 심사일을 재지정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 제8조에 따라 서면으로 의결할 수 있다.

1. 제1항에 따른 심사 과정에서 제15조제1항 및 제2항의 조사가 추가적으로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2. 제17조에 따른 위원 제척으로 소위원회가 제12조제2항에 따른 의사정족수를 충족할 수 없는 경우
- ④ 소위원회는 회의를 개최하고 그 심사 내용과 결과를 확인 후 별지 제7호 서식에 따른 심사 의결서에 서명한다.

제6장 보칙

제17조(위원의 제척) 위원회 및 소위원회의 입원등의 심사에서 심사 대상이 되는 사람이 입원등을 하고 있는 정신의료기관등에 소속된 위원은 제척(除斥)된다.

제18조(운영 경비) ① 위원회 및 소위원회에서 개최하는 회의에 참석한 위원에게는 참석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업무와 직접 관련되어 참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위원회 및 소위원회 운영 등에 필요한 경비는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 등을 준용한다.

제19조(비밀준수 의무) 위원회 및 소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한 자는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20조(운영세칙) 이 규정 외에 위원회 및 소위원회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장이 정할 수 있다.

부칙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국립[] 입원적합성심사위원회 위원 신청서

위 원 정 보	성 명		생년월일	년 월 일
	연락처			
	참석가능일	예시)매주 월요일(월4회) 격주(1,3주 또는 2,4주) 월요일(월2회)		
	주 소			
	E-Mail			
	소속 및 직위	(위원 요건): 예시)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전공 및 주요경력			

상기 본인은 국립[]입원적합성심사위원회 위원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국립[]장 귀하

첨부서류	별지 제2호서식의 입원적합성심사위원회 위원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
------	--

입원적합성심사위원회 위원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

국립[]는 입원적합성심사위원회 위원 위촉 및 위원회 개최 안내를 위한 개인정보를 수집 이용하고 있습니다. 아래 내용을 자세히 읽어보시고, 모든 내용을 이해하신 후에 동의 여부를 결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개인정보 수집·이용 내역(필수)

수집 항목	성명, 생년월일, 연락처(사무실, 휴대전화), 주소, 전자우편주소, 소속 및 위원요건, 전공 및 주요경력
수집 목적	입원적합성심사위원회 위원 위촉을 위한 위원요건 및 자격 확인 입원정합성심사위원회 및 입원심사소위원회 개최 일정 안내
보유 및 이용기간	(위원 위촉 시) 위원 위촉 종료 시까지 (위원 미 위촉 시) 위원 위촉 절차 종료 시까지

※ 위의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동의를 거부할 경우 원활한 서비스 제공에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위와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는데 동의하십니까?

동의함

동의하지 않음

년 월 일

동의인 : (서명 또는 인)

국립[]장 귀하

위촉동의서

본인은 국립[] 입원적합성심사위원회의 위원으로 성실히 활동하며 다음과 같은 의무사항을 준수할 것을 동의합니다.

1. 본인은 입원적합성심사위원회의 위원으로 활동하기 위해 사전 교육을 받는다.
2. 본인은 입원적합성심사의 공정성 및 객관성을 확보하고 환자의 권리보장을 위한 연 4시간 이상의 교육을 받는다.
3. 본인은 입원적합성심사위원회의 원활한 운영 및 위원 직무를 위해 연 60% 이상의 심사 활동에 참여한다.

※ 위 사항의 교육 이수 시간 및 연간 참여율을 고려하여 재위촉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

이
계
표

서약자 :

(서명 또는 인)

국립[]장 귀하

보 안 서 약 서

본인은 국립[] 입원적합성심사위원회의 위원으로 활동하며 알게된 개인정보에 관하여, 다음과 같은 사항을 준수할 것을 엄숙히 서약합니다.

1. 본인은 입원적합성심사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며, 입원심사소위원회 및 국가 입퇴원관리시스템의 자료를 바탕으로 취득한 정보의 중요성을 인지하고, 개인정보보호 및 정보통신보안 등의 관계 규정 및 지침을 성실히 수행한다.
2. 본인은 이 정보를 누설함이 국가 및 개인의 이익을 침해할 수도 있음을 인식하고 위촉 중은 물론, 해촉 후에도 직무상 알게 된 정보를 일체 타인에게 누설하지 아니한다.
3. 본인은 비인가자의 도용 및 유관 정보시스템 불법접속을 막기 위해 개인 비밀번호 관리 등에 주의를 기울이며, 시스템의 모든 정보 및 계정, 전산망 등의 자원은 업무 이외의 다른 목적으로 이용하지 아니한다.
4. 본인은 직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를 누설 또는 권한 없이 처리하거나 타인의 이용에 제공하는 등 부당한 목적을 위하여 사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부패행위 신고나 이와 관련한 진술, 자료 제출 등과 「공익신고자 보호법」에 따른 공익신고 및 공익신고에 대한 진술·증언 또는 자료 제공의 경우 비밀준수 의무를 위반하지 않은 것으로 본다.
5. 본인은 정보를 누설하거나 아래의 관계법규 등을 위반할 때에는 엄중한 처벌을 받을 것을 서약한다.
가. 정신건강복지법 제71조(비밀누설의 금지) :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나. 개인정보보호법 제59조(금지행위) :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년 월 일

서약자 :

(서명 또는 인)

국립[]장 귀하

입원적합성심사위원회 서면의결서

- 회의명 : 제 - 차 입원적합성심사위원회
- 서면의결사유 :
- 상정안건 내용

상정안건 번호	상정내용 可(○), 否(×)	추가 의견
제 -호		
제 -호		

위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위와 같이 의결합니다.

년 월 일

입원적합성심사위원회 위원 성명 (서명 또는 인)

국립[] 입원적합성심사위원회 위원장 귀하

대외주의

입원심사소위원회 회의록

소위원회명: 제 소위원회	일시: . . . ~	장 소:
상정안건: 건	심사결과:	작성자:
참석자:		

연번	환자명	병원명	의결결과 (적합/부적합)	발언요지
1			5:0	· 입원등 유지로 의결함
2			3:2	· 위원1: 환자이송 중 0000 행위가 강압적이라고 판단됨 · 위원2: 정황상 물리적인 접촉은 과도하다고 보임 · 위원5: 병식이 없고 가족들에게 위해가 될 수 있어 보이며 자해 가능성도 높아 보임 · 위원장: 위원 간 의견이 충분히 논의되었으므로 다수결로 의결 진행하겠음 · 결과: 적합 3, 부적합 2로 입원등 유지로 최종 의결
3			1:4	· 위원3: 환자 증상의 급박성을 감안할 때 입원일 이후 서류 제출(입원허가 판결문)은 불가피한 것으로 보임 · 위원장: 위원 간 의견이 충분히 논의되었으므로 다수결로 의결 진행하겠음 · 결과: 적합 1, 부적합 4로 퇴원등으로 최종 의결
4			0:5	· 퇴원등으로 의결함 · 퇴원 의결 사유 작성
5				
6				
7				
8				
9				
10				
11				
12				

□ 비고

○ 예) 00. 000환자 000사유로 의료기관 및 지자체 공문 발송 요청

심 사 의 결 서

의결번호	제0000-00-00-000 호	의결소위원회	
의결연월일		의결 결과	입원등 건, 퇴원등 건, 각하 건

연번	환자명	의결사항 (의결수)		심사결과* (입원등유지○, 퇴원등×)	연번	환자명	의결사항 (의결수)		심사결과* (입원등유지○, 퇴원등×)
		입원등 유지	퇴원등				입원등 유지	퇴원등	

* ‘각하’ 심사처리된 건에 대해서는 ‘각하’로 표시

위와 같이 심사결과가 의결되었음을 확인합니다.

. . . ()

국립○○○○ 입원적합성심사 제 소위원회

구분	성 명	서 명
위원장		
위원		
위원		
위원		
위원		
위원		

「입원심사 제 소위원회」 심사결과

의결번호	제0000-00-00000호			
일 시				
장 소				
작 성 자				
심사위원	소위원장			
	위원			
심사 최종결과				
신고기관명	입원등 유지(00명)	퇴원 등(00명)	각하(00명)	
심사결과 및 사유				
구 분			심사결과	근거 및 사유
환자명	생년월일	입원병원		

입원·입소 적합여부 통지 및 확인서

※ 해당되는 []에 √표시를 하시기 바랍니다.

환자	성명	생년월일	연락처
	(남, 여)		
주소			
환자 입원(입소)일		입원(입소)기관명	
년 월 일			

1. 환자는

- [] 「정신건강복지법」 제 43조 제 4항에 따라 3개월의 기간 내 보호입원(입소)
 [] 「정신건강복지법」 제 44조 제 7항에 따라 3개월의 기간 내 행정입원 되었습니다.

2. 환자의 입원적합성심사위원회 심사결과는 다음과 같습니다.

입원(입소) 적합 결정 []	[] 입원(소) 과정이 적법하며, 환자의 입원치료 필요성이 인정됨
입원(입소) 부적합 결정 []	[] 환자이송 중 강압적인 행위로 인해 이송과정의 적법성이 인정되지 않음
	[] 신고서의 정보 누락 및 사실 확인이 어려움
	[] 1·2차 진단결과서 상 최종소견 불일치
	[] 진단결과서의 입원치료 필요성 및 자·타해 위험여부가 명확하지 않아 퇴원
	[] 입원(입소)에 따른 증빙서류 미비
	[] 보호의무자 자격이 인정되지 않음
	[] 후견인 관련 증빙서류 부적격
	[] 입원 유형 전환기일 등 법적 기일 미준수
[] 기타 사유	
각하결정 []	[] 입원적합성심사가 이뤄지기 전 퇴원한 경우(법 제43조, 제44조에 따른 입원등) [] 법 제43조 제4항 및 제44조 제6항에 따라 1·2차 전문의의 일치된 소견을 갖추지 못한 경우
	년 월 일

입원적합성심사위원회 위원장

직인
생략

*** 구제(불복)방법 안내:** 환자는 위 입원(입소)적합 결정에 이의가 있어 퇴원을 요구할 경우 입원(입소)기관 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에 인신보호법 제3조에 따른 구제청구서를 작성하여 제출할 수 있습니다. 입원 정신의료기관은 인신보호법 제3조의2 제2항에 따라 환자의 구제청구를 방해하여서는 안 됩니다. 이에 필기도구 및 자유롭게 작성할 수 있는 환경제공, 문해·인지능력이 부족한 경우 작성 지원 등에 협조해주시기 바랍니다.

※ 아래 진하게 칠해진 부분은 환자가 직접 작성하여야 하는 부분입니다. 환자가 작성불능인 경우에는 그 사유를 확인담당자가 기재할 수 있습니다. 정신의료기관은 본 서식을 한 부 환자에게 제공하고, 다른 한 부에는 환자에게 아래 구제방법 고지 확인서를 작성하게 한 후 정신의료기관에서 보관하여야 합니다.

구제방법 고지 확인서

인신보호 구제청구 [] 신청함, [] 신청 안 함, [] 신청불능(사유:)	
고지일시: 년 월 일 시 분	환자 성명 (서명)
서명불능사유: [] 서명거절, [] 서명불능(사유:)	
확인담당자	작성일
	년 월 일
	성명 (서명)

입원에 대한 환자 의견진술서

환자	성명	생년월일 (남, 여)	입원기관
----	----	----------------	------

1. 본 의견진술서는 입원의 적합성 여부를 심사하는 입원적합성심사위원회의 심사자료로 제공됩니다.
2. 환자 본인이 입원의 적합성 등에 대해 의견이 있으면 아래에 구체적으로 기재해 주십시오.
- 본인은 입원적합성심사위원회의 입원적합성 심사에 위와 같이 의견을 진술합니다.

환자 의견서

1. 이송과정에 대한 문항입니다.(※ 필수 문항 / 해당되는 □에 모두 √ 표시를 하시기 바랍니다.)

- 나는 병원에 올 때 [☐ 가족 ☐ 경찰 ☐ 119구급대 ☐ 응급환자이송업체 ☐ 기타: _____]
- 과(와) 함께 있었음
- 나는 이송 당시 병원으로 오는 것을 [☐ 알고 있었음 ☐ 알지 못했음]
- 병원으로 오는 과정에서,
 - ☐ 몸의 일부를 움직이지 못할 정도의 물리적인 접촉이 있었음
 - ☐ 강제적인 상황이 없었음
- 이송과정과 내용을 구체적으로 기재해 주십시오.(당시 상황, 이송 방법, 기타 불편을 느낀 사항 등)

2. 동의입원에서 보호입원/행정입원으로의 전환 과정에 대한 문항입니다.(※ 해당하는 경우에만 기재)

- 나는 동의입원 당시 스스로 입원을 신청함 (☐ 예 ☐ 아니오)

- 입원유형 변경 전에도 퇴원을 신청했던 적이
(☐ 있었음(기억나는 날짜나 시점 등 기재: _____) ☐ 없었음)

- 퇴원 신청 후 퇴원이 거부된 사유와, 원하는 경우 퇴원 심사를 청구할 수 있다는 설명을
(☐ 들었음 ☐ 듣지 못했음 ☐ 기억나지 않음)

3. **입원심사소위원회에 의견 전달을 원하는 경우 아래에 기재해 주십시오. (※ 해당하는 경우에만 기재)**

- 입원이 부당하거나 퇴원이 필요한 사유, 향후 치료 및 생활 계획 등을 구체적으로 작성

(뒷장 작성 가능)

작성자	[] 환자 [] 조사원 [] 기관 담당자 [] 기타	성명	(서명)
-----	----------------------------------	----	------

년 월 일

환자: _____ (서명)

국립 0000 입원적합성심사위원장 귀하